

##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 현황과 시사점

서정민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장 (jmsuh@kiep.go.kr, Tel: 3460-1186)

금혜윤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Tel: 3460-1205)

엄준현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jheom@kiep.go.kr, Tel: 3460-1149)

## 차 례 ●●●

1. 배경
2. 환경상품 무역협정의 국제적 논의
3. 환경상품 국제교역의 특징
4. 환경상품 무역협정의 규범형식
5. 시사점

## 주요 내용 ●●●

- ▶ 2013년 6월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집권 2기 우선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함.
  - 국제적 행동계획으로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상 개시’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그간의 국제 논의를 전략적으로 구체화시켜 향후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정 규범형식은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힘겨루기가 국제통상 영역은 물론 국제환경 영역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 전 세계 환경상품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주요국들에서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수출이 증가하는 분야인 점을 고려할 때, 동 협상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의미하는 바가 큼.
  - 환경상품 부문은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부문별 복수국간 협정방식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바, 선진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동 협상의 논의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 통상전략 수립에 활용해야 함.
- ▶ 동 협정 논의는 급변하는 국제통상체제와 국제환경규범의 교집합 영역에 속하는 국제논의로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대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된 외교적 전략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해야 함.
  - 가령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을 환경상품 관련 기술이전 및 관련 제품 사용 확대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GCF 자원 활용이 용이한 품목과 환경상품 무역협정에 포함될 품목을 가능한 한 일치하는 안(案)은 GCF의 역할 확대를 통한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1. 배경

■ 2013년 6월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집권 2기 우선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함.<sup>1)</sup>

- 이번 행동계획은 지난 6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의 조지타운 대학 방문연설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대부분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행정명령(executive actions)의 형식으로 구성됨.
  - 이는 집권 1기 동안 연방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등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수차례 의회 통과가 좌절되었던 경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sup>2)</sup>

■ 행동계획은 기존 정책에 몇 가지 새로운 정책이 보강된 형태이며, 국내적 차원의 행동계획과 국제적 차원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됨.<sup>3)</sup>

- 국내적 노력방안에는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30% 증가, 2014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에 27억 달러 투자 등이 포함됨.
- 국제적 협력을 통한 노력방안에는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주요국과 다자적 개입 강화, 기후 투자 프로젝트 활성화, 청정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공적 재정투자 촉진,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상 개시 등이 포함됨.

■ 국제적 행동계획으로 새롭게 제시된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상 개시’ 방침에서 복수국간 협정방식이 언급되는 등 그동안의 관련 국제 논의가 전략적으로 구체화되어 향후 관련 논의에서 미국이 보다 진지하게 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무역협상 논의는 WTO DDA 협상의제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나, 동 행동계획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고, 상품에 관한 협상을 복수국간 협정방식으로 고려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함.
-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정을 위한 교섭을 WTO에서 개시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이 협상하는 다자간(multilateral) 방식보다는 관심 있는 국가들만을 협상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 방식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향후 1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 교역에서 90%, 금액으로는 4,800억 달러(약 530조 원)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협상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으로 복수국간 협상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 한편 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에서 다룰 계획임을 밝힘.

1) The White House 웹사이트(2013a).

2) ICTSD 웹사이트(2013).

3)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3).

- 이번 미국의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정 제시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측면 외에 미국정부가 환경상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증가를 미국 산업에 대한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 측면이 있음.<sup>4)</sup>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미국의 미래 경제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추진을 천명해 옴.<sup>5)</sup>
    - 2007년부터 미국은 환경상품 교역에서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9년에는 4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함.<sup>6)</sup>
  - 한편 전 세계 환경상품 최대교역국인 EU는 동 무역협정을 무역확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미국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임.<sup>7)</sup>
  
-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정 규범형식은 복수국간 협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힘겨루기가 국제통상 영역은 물론 국제환경 영역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정의 형식에 대해 환경상품 최대교역국인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WTO 협정의 틀 내에서 추진하기를 원하며, 특히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과 유사한 형식을 선호하고 있음.<sup>8)</sup>
  -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환경상품의 범위와 선정방식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으로 무역자유화 차원 외에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문제와 연계되어 그 구체적인 해법은 무역협상뿐 아니라 국제환경협상과 맞물려 모색될 것으로 전망됨.
  
- 본고에서는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이하, 환경상품 무역협정) 논의의 전개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환경상품의 교역현황과 예상되는 협상방식을 검토한 후, 본 논의가 가지는 시사점을 환경상품 무역협상 자체는 물론 국제통상 협상 측면과 국제환경 협상 측면에서 조망함.

4) Senator Ron Wyden(2010).

5) The White House(2013b).

6) 특히 적자액 중 80%는 풍력발전설비와 태양광설비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7) EU의 구체적 배경은 European Commission(2013) 참고.

8) IT 제품의 무세화를 목표로 하는 WTO의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은 복수국간 협정의 한 형식으로 1997년 7월에 최초 발효되었고, 2012년부터 대상 IT 품목 및 참여국 확대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2013년 7월 현재 ITA 확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등 총 27개국임.

## 2. 환경상품 무역협정의 국제적 논의

### 가. 논의 전개과정

- 1990년대 이후 환경산업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강조되면서 OECD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및 산업에 대한 정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WTO에서는 2001년 도하각료선언 이후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가 주요 통상 이슈로 주목받게 됨.
  -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WTO DDA 협상에 환경 및 개발 의제를 포함시켜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킴.<sup>9)</sup>
  - 2001년 WTO 각료회의 이후 무역과 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는 도하각료선언 제31조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논의를 가속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특히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철폐(3항)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둠.
    - 2007년 12월 미국과 EU는 World Bank에 의해 친환경상품으로 분류된 43개 품목을 참고로 하여 환경상품 및 서비스협정을 WTO에 제안한 바 있음.
  - 또한 WTO 환경협상 주도국들은 회원국 수가 비교적 적은 APEC을 통해 환경상품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축소하여 좀더 실질적인 협상 성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동반함.

### 나. 논의 쟁점사항

- 첫째, 환경상품의 범위 선정과 관련하여 환경상품으로 제시된 품목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범용성(dual use) 문제가 있음.
  - 환경상품은 크게 전통적인 오염저감 품목과 친환경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WTO 환경협상에서 채택되는 환경상품 범위에 대한 접근법에 따라 상대적 개념을 가진 친환경상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WTO 환경협상 회원국들에 의해 제안된 접근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리스트 접근법, Request & Offer 방식, 프로젝트(project) 접근법, 알파베타 접근법이 있으며, 그 밖에 이들 접근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있음.<sup>10)</sup>

9)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내용이 명시되면서 WTO 차원에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10) Request & Offer 방식은 각국이 자국의 환경상품을 선정하여 자유화 대상 환경상품을 타국에 요청하거나 자국의 자유화 대상 환경상품으로 타국에 제공하는 방안이고, 프로젝트 접근법은 각국 정부가 환경사업을 실시하고 여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업기간 중에 특별하게 양허하는 방안임. 알파베타 접근법은 전체 환경상품 목록에서 선진국은 최소 알파만큼의 상품을, 개도국은 베타만큼의 상품을 자유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되,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크도록 하는 방안임.

- 앞으로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선진국들이 제안한 리스트 접근법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sup>11)</sup> 개도국들은 범용상품 및 친환경상품이 환경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환경상품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둘째, 환경상품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분류인 HS code 6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품분류가 상이한 HS code 8~10단위의 세부품목을 환경상품에 포함할 경우 이를 측정하고 환경적 영향을 분석할 방법이 부재함.

- HS code 6단위 기준의 분류체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목이 세분화되지 않아 비환경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상품을 구별해내기 어려움.

- WTO 환경프렌즈그룹이 제안한 환경상품 리스트에서 전체 153개 품목 가운데 96개 품목, 2012 APEC 환경상품 리스트의 경우에도 54개 품목 가운데 46개 품목에 대해 세부 및 제외 품목(Ex-Out/Additional Product Specification)을 회원국간 합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

■ 일부 국가들은 환경상품의 범위 및 분류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외에 더 나아가 환경상품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논의도 제기하고 있음.

- 환경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중 특히 현지부품 사용요건 부과, 기술표준, 보조금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11년 7월 DDA 협상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이 현지부품 사용요건 부과금지를 제안한 바 있으며, 최근 거래가 활발한 광전지, 풍력발전용 터빈 등의 분야에 국제적 기술표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 다. 주요 협상안의 특징<sup>12)</sup>

■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협정을 주도하는 선진국들은 협상안 내용구성에 주로 리스트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OECD, World Bank, WTO, APEC은 각각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제시하였는바 환경상품의 분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WTO와 APEC의 환경상품 리스트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관세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OECD와 World Bank의 리스트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 또는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 또한 각 리스트에 포함되는 환경상품의 범위를 살펴보면 APEC과 World Bank에 비해 WTO와 OECD가 비교적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

11) 리스트 접근법이란 모든 회원국이 상호 동의한 환경상품의 기본 리스트를 작성함과 동시에 선진국에서는 환경상품으로 인식되거나 회원국간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품을 보충 리스트(complementary list)로 작성하고, 개도국은 기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상품을 개발 리스트(development list)로 작성하는 방식임.

12) 임경수 외(2012); 김정곤 외(2011); World Bank(2007)를 참고하여 작성.

- HS code 2단위를 기준으로, WTO와 OECD 리스트는 각각 14개, 17개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APEC과 World Bank는 4개, 8개의 품목을 포함함.

표 1. 환경상품 리스트별 특성에 따른 분류

범위 \ 목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관세 감축
포괄적 품목	OECD (17)	WTO (14)
구체적 품목	World Bank (8)	APEC (4)

주: ( ) 안은 개별 리스트가 포함하는 품목군(HS code 2단위 기준) 수.  
자료: 저자 작성.

- (OECD) 1992년 환경산업 시장의 발전과 환경정책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OECD는 심도 깊은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Eurostat와의 공동작업(1994~97년)을 통해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분류체계를 최초로 제시하였음.
  - OECD 환경상품 리스트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목적으로 청정기술과 상품, 화학물질을 포함한 광범위한 환경상품으로 구성되며, 크게 ① 환경오염 처리를 위한 용도의 제품 및 설비(pollution management: A그룹), ② 일반 범용상품 가운데 청정기술이 적용된 제품(cleaner products and technologies: B그룹), ③ 자원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용도의 제품 및 설비(resource management: C그룹)로 구분되는 하향식(top-down) 구조임.
  - 161개 품목이 포함된 OECD 리스트에서 폐수처리와 같은 환경문제 관련 품목이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 리스트는 포괄적인 환경상품의 경제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무역협상이나 특정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은 낮은 편임.
- (World Bank) World Bank는 오로지 환경보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43개의 환경 친화적인 품목을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상품(climate mitigation goods)은 환경상품에 대한 교역장벽을 완화·철폐하기 위한 각종 국제적 협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상품들에 대한 관세인하는 이 상품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기술이전의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줌.
  - 보통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상품으로 인식되는 환경상품의 수출은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World Bank가 제안한 기후완화상품들의 자유화에 따른 이득도 이러한 국가들에만 귀속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WTO) 2007년 DDA 협상이 재개된 이후 관세감축을 우선 추진할 환경상품을 선정하는 작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7월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으로 구성된 WTO 환경프렌즈그룹은 리스트 접근법으로 선정된 153개 환경상품에 대해 2012년까지 관세율을 최대 5%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을 제안함.

- WTO 환경상품 리스트에서는 폐수처리 및 측정분석 관련 품목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밖에 재생가능에너지, 폐기물 관리 관련 품목이 다수 포함됨.
- 개도국들은 대부분의 품목이 환경 타당성이 부족한 범용상품이며, 선진국의 대개도국 기술이전의 보장 여부 문제와 환경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임.

■ (APEC) 1994년 APEC 환경장관들에 의해 환경협력 비전 성명서 채택 이후 시장개방 및 무역과 직결되는 환경상품에 대한 논의는 1997년 환경상품 리스트 개발을 기점으로 구체화되었으며, 2007년부터 이 리스트의 수정 및 추가 논의를 거쳐 2012년 15개 회원국의 초안에 입각하여 2012 환경상품 리스트가 개발됨.<sup>13)</sup>

- APEC의 2012 환경상품 리스트는 HS 6단위 기준 54개 품목으로 2015년까지 해당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며, 교역용이 품목과 최근 환경 이슈(재생에너지 등) 반영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큰 틀에서 APEC 환경상품 논의는 WTO 차원의 논의와 유사하며, 미국을 비롯한 WTO 환경협상 주도국들이 논의 플랫폼을 APEC으로 이동하여 적은 품목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테스트베드(testbed)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3. 환경상품 국제교역의 특징

#### 가. 교역의 전반적 특징<sup>14)</sup>

- [표 2]에서와 같이 2011년 전 세계의 환경상품 수출은 1조 826억 달러, 수입은 1조 890억 달러였으며, 이 중 우리나라는 수출 약 334억 달러, 수입 35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에 비해 수출에서 빠른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전 세계 상품 무역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석기간(2007~11년)에 6%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적자폭도 줄어들고 있음.
  - 분석기간에 철강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계측기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음.

13) APEC 15개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임.

14) 여기서 분석대상이 되는 전체 환경상품이란 WTO, OECD, APEC, World Bank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통합하여 이를 HS 2007로 전환하고 동일한 품목은 제거한 후 도출된 HS code 6단위 기준 208개의 품목을 말함.

표 2.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연도별 환경상품 교역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세계	수출	758.2 (6.8)	910.4 (6.7)	761.5 (6.9)	921.7 (6.8)	1,082.6 (6.5)
	수입	723.1 (6.1)	898.8 (6.2)	759.1 (6.5)	930.3 (6.5)	1,089.0 (6.3)
	교역	1,481.3 (6.5)	1,809.2 (6.4)	1,520.6 (6.7)	1,852.0 (6.6)	2,171.6 (6.4)
우리나라	수출	16.4 (4.4)	20.2 (4.8)	19.7 (5.4)	26.7 (5.7)	33.4 (6.0)
	수입	25.4 (7.1)	29.1 (6.7)	25.9 (8.0)	31.3 (7.4)	35.0 (6.7)
	교역	41.8 (5.7)	49.3 (5.8)	45.6 (6.6)	58.0 (6.5)	68.4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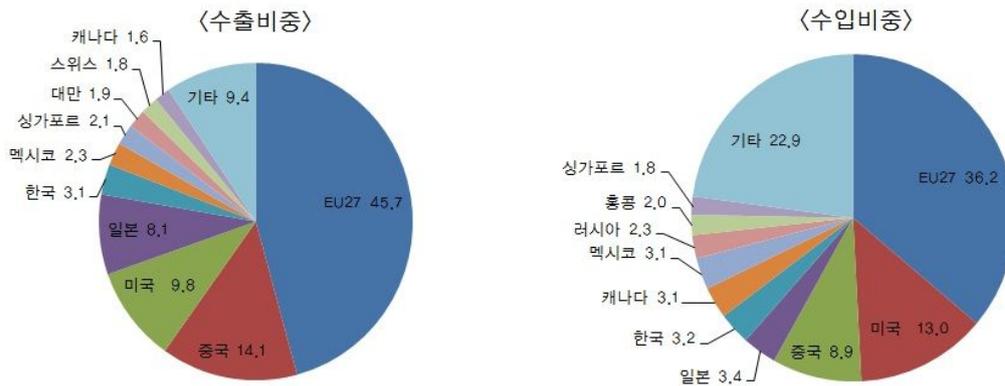
주: ( ) 안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UN COMTRADE.

■ 2011년 기준으로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EU27로 세계 수출에서 45.7%, 세계 수입에서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상품은 대체로 선진국간 교역이 주를 이룸.<sup>15)</sup>

- EU, 미국, 중국, 일본이 높은 교역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은 대세계 수출 3.1%, 수입 3.2%의 점유율을 보임.
- 즉 세계 전체 상품 교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환경상품 교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TO DDA의 환경협상을 주도하는 EU의 환경상품 교역비중이 전체 상품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높은 것이 특징임.

그림 1. 전체 환경상품의 대세계 주요 수출입국 현황(201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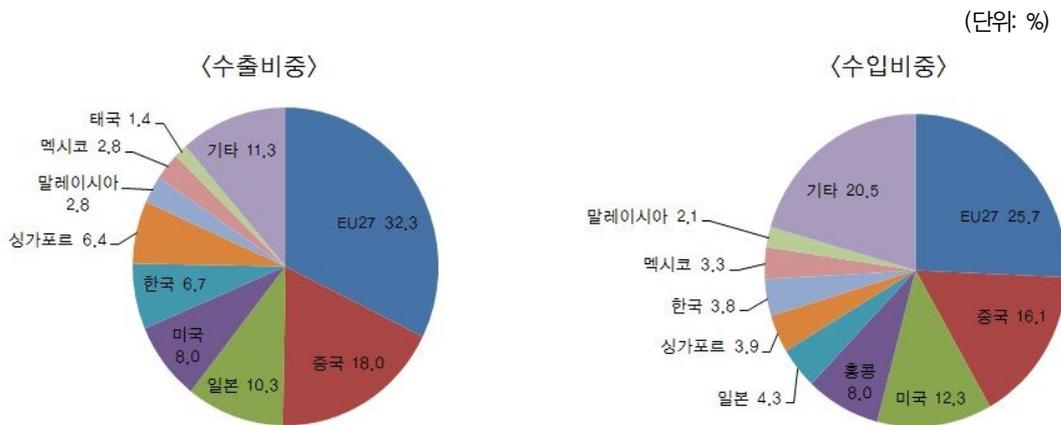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향후 환경상품 무역협상이 ITA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진행 중인 ITA 확대협상 논의 품목의 교역 특징과 비교해 보면, 몇몇 국가간 교역이 집중된다는 점은 유사하나 환경상품 교역이 IT 상품 교역에 비해 선진국 편향적인 교역구조를 보임.<sup>16)</sup>

15) 전 세계 환경상품 교역액에는 EU27의 역내교역액도 포함된 값이므로, 실제 EU27이 차지하는 대세계 수출입 비중은 다소 낮을 것임.

- [그림 2]는 ITA 확대협상에서 논의 중인 250개 품목(HS 6단위 기준)의 전세계 주요 수출입 국가를 나타내는데, EU,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국제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이 환경상품과 유사함.<sup>17)</sup>
- 그러나 ITA 대상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태국 등 상당수의 개도국도 주요 교역국에 포함되나, 환경상품의 교역국은 중국을 제외하면 일부 선진국간 교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소수국가에 교역집중도가 높다는 점에서 ITA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임승차 유인극복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sup>18)</sup> 선진국 위주의 교역 집중은 환경상품의 교역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측면에서는 기여도가 낮을 수 있음.

그림 2. ITA 확대협상 대상품목의 전세계 주요 수출입국 현황(2011년)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2011년 전체 환경상품 수출액의 31.8%인 106.2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최대 수입국은 전체 환경상품 수입액의 23.2%인 81.2억 달러를 수입한 일본임.
- 환경상품 수출의 경우, 중국을 포함하여 5대 수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4.1%, 수입에서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5대 수입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 동향과 마찬가지로 환경상품 교역국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무역 교역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sup>19)</sup>
- 전체 환경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은 6.9%이나, 대부분의 환경상품이 한·EU 및 한미 FTA에서 즉시 철폐 또는 5년 내 완전 철폐 품목이어서 EU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6) ITA 방식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은 4장을 참고할 것.

17) 1997년부터 발효 중인 1차 ITA 협상의 대상품목은 HS 1996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최근의 변화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ITA 확대협상 대상품목(2013년 7월 제12차 기술회의 대상품목 250개, HS 6단위 기준)을 현재 논의 중인 환경상품과 비교하였음.

18) 교역집중도와 최혜국대우 원칙에 의한 무임승차 유인극복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udema and Mayda(2009)를 참고.

19)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논의되는 환경상품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HS code 10단위의 세부품목 기준으로 환경상품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어 환경상품만의 특징적인 교역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6.9%로 개도국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이유는 HS 220710(변성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바이오연료의 일종)의 관세율이 103.3%로 매우 높기 때문이며,<sup>20)</sup> 이 품목은 대부분상 농산품으로 한·EU 및 한·미 FTA에서도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임.

표 3.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상대국	금액	상대국	금액
1	중국	10,616.5 (31.8)	일본	8,116.1 (23.2)
2	EU27	3,551.7 (10.6)	중국	8,021.3 (22.9)
3	미국	3,294.8 (9.9)	EU27	7,452.8 (21.3)
4	일본	2,815.2 (8.4)	미국	4,781.6 (13.7)
5	인도	1,101.1 (3.3)	대만	1,057.4 (3.0)
	소계	21,379.2 (64.1)	소계	29,429.2 (84.2)
	총 수출액	33,370.7 (100)	총 수입액	34,953.6 (100)

주: ( ) 안은 우리나라의 전체 환경상품 교역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UN COMTRADE.

## 나. 주요 상품교역의 특징

- 범용성 논란이 적어 향후 협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단용(single use) 환경상품의 교역현황은 [표 4]와 같으며,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를 제외하면 이러한 품목들의 세계적인 교역수준은 아직까지 미미한 편임.
  - HS 854140은 광전지를 비롯하여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품목은 세계적인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에 유용한 바이오연료 가운데 하나인 에틸알코올(HS 220710)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매우 많고, 풍력 발전용 터빈(HS 850231)은 2008년 이후 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대신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sup>21)</sup>
  - [표 4]에서 언급된 환경상품 외에도 1세대 바이오연료의 한 종류인 바이오디젤(HS 382490), 전기자동차(HS 870390) 등을 주요 단용 환경상품으로 들 수 있으나, 이러한 품목들의 HS code 6단위 세번에는 환경과 관련 없는 다양한 상품들도 포함되므로, 해당 환경상품만의 교역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20) 전체 환경상품에 대한 개도국의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은 5.5%, 선진국은 1.5%임.

21) HS 850231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단용 환경상품만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HS code 6단위 세번임.

표 4. 대표적 단용(single use) 환경상품의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품명	구분	2011년 세계 교역액	우리나라 교역액				
				2007	2008	2009	2010	2011
HS 2207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바이오연료)	수출	6,391.6 (0.6)	0.3	1.4	0.2	0.1	0.03
		수입	5,940.0 (0.5)	69.4	107.4	65.5	87.7	123.3
HS 700800	유리제의 복층 절연유닛(단열재)	수출	1,307.3 (0.1)	1.7	3.6	1.6	1.7	0.2
		수입	1,239.6 (0.1)	1.0	3.9	3.3	5.7	3.5
HS 841861	압축식 유닛(열펌프)	수출	2,471.4 (0.2)	8.9	2.3	0.7	0.7	5.2
		수입	1,916.3 (0.2)	13.9	10.4	1.6	2.4	6.6
HS 841919	태양열 온수기	수출	1,901.3 (0.2)	2.7	3.2	1.9	4.0	11.1
		수입	1,955.8 (0.2)	3.2	3.1	1.7	3.3	6.6
HS 850231	풍력 발전용 터빈	수출	5,419.6 (0.5)	0.2	3.0	1.6	14.3	13.3
		수입	7,277.8 (0.7)	33.6	102.2	37.5	2.1	2.8
HS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	수출	71,051.7 (6.6)	563.2	805.1	1,307.3	3,807.2	3,884.3
		수입	72,052.4 (6.6)	1,276.8	2,143.8	1,996.0	2,793.8	2,822.8
HS 903210	온도자동조절용 기기	수출	3,010.5 (0.3)	48.4	39.1	31.9	40.6	48.4
		수입	3,459.6 (0.3)	34.0	47.9	28.5	36.7	37.5

주: ( ) 안은 세계의 전체 환경상품 교역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UN COMTRADE.

■ [그림 3]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로 교역하는 환경상품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HS 854140(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다이오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9년 이후 수출입액이 크게 늘어나 2011년 수출은 38.3억 달러, 수입은 28.2억 달러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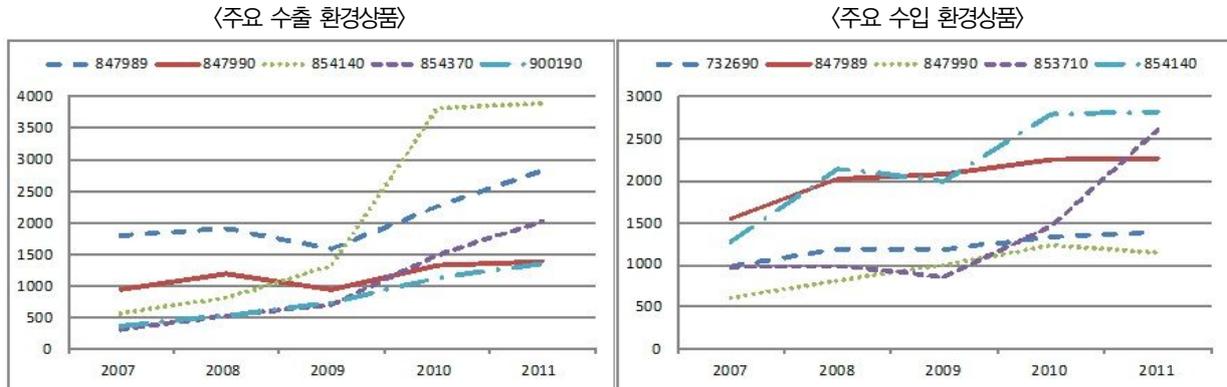
- HS 854140 품목은 세계적으로도 교역액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에 비해 수출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자동차 및 선박용 부품과 기타 기계류 품목 역시 교역이 많은 품목이나 수출은 점차 줄어들고 수입 비중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sup>22)</sup>
-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다른 품목으로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제품과 광학기기 부품이 있으며, 반면에 기초산업기계·정밀기계·수송기계의 부분품은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환경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4.1%로 크게 줄어들었음.<sup>23)</sup>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품목은 배전 및 제어기로 2007년 9.7억 달러에서 2011년 26억 달러까지 수입규모가 늘어났으며, 수출 비중의 감소폭이 컸던 각종 기계의 부분품(HS 847990) 수입 비중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sup>24)</sup>

22) 자동차 및 선박용 부품, 기타 기계류 품목은 HS 847989(동 칩터에 속하지 않는 기계류)에 포함됨.

23)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제품은 HS 854370(동 칩터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전기기기), 광학기기부품은 HS 900190(프리즘반사경 등 기타의 광학용품), 기초산업기계·정밀기계·수송기계의 부분품은 HS 847990(8479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품목임.

그림 3.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환경상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

-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입하는 환경상품은 단용 제품보다는 범용가능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환경상품의 범위 관련 협상에서 범용성 및 품목 분류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환경상품 무역협정의 규범형식

- 환경상품 무역협정의 규범형식에 따라 참여국과 비참여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근본적인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논의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으며, WTO 협정 내 접근은 물론 관련 국제환경협약을 통한 접근 등 다양한 제안이 존재함.
  - 협정의 규범형식에 관한 논의는 각국의 이해를 결정하는 근간이란 점에서 규범형식별 특징을 점검하여 향후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음.
  - UNFCCC의 틀 내에서 환경무역을 다루는 형식, WTO 협정의 틀 내에서 일반적 의무에 대한 면제(wavier)를 받아 환경상품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형식, 별도 협정으로 추진하되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문제가 되면 그때 사안별로 해결하는 형식,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 사이의 복수국간 협정의 형식, WTO 협정이나 UNFCCC와는 별개의 협정으로 추진하는 형식 등 다양한 규범형식이 제안되고 있음.<sup>25)</sup>
- 규범형식에 관한 다양한 제안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추진하는 규범형식이 특히 주목받고 있음.
  - UNFCCC의 틀 내에서 환경무역을 다루는 형식에 대해서는 UNFCCC가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한 규범이어서 무역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며, 별도 협정으로 추진하되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문제가 되면 그때 사안별로

24) 배전 및 제어기는 HS 853710(전압이 1,000V이하인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패널 등)으로 분류됨.

25) Hufbauer and Kim(2009), pp. 9-14.

해결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WTO 협정은 무역에 관한 규범인 까닭에 환경적인 이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sup>26)</sup>

- WTO 협정의 틀 내에서 일반적 의무에 대한 면제를 받아 환경상품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형식 역시 그 결정이 회원국 3/4의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sup>27)</sup> 면제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DDA 협상에서 환경 이슈가 의제에 포함되었음에도 국가들 사이 이익의 첨예한 충돌로 타결에 이르지 못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형식은 WTO 협정과의 관계설정에 따라 두 개의 형식으로 나뉘므로 주요 검토대상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가. ITA 형식

■ (의의) ITA 형식은 관련 무역협정을 지지하는 복수 국가들 간의 무역협정으로 추진하되, 참여국들이 환경상품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를 GATT 1994의 상품 양허표에 반영하게 할 것을 환경상품에 관한 협정상의 의무로서 규정하는 형식을 뜻함.<sup>28)</sup>

- 19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체결된 ITA 방식의 특징은 1) WTO 회원국 및 당시 WTO 가입 절차 중에 있던 국가간 교섭, 2) 협정 내용에 대한 자국의 GATT 1994의 상품 양허표 수정, 3) 그 결과에 따라 ITA 참여국의 관세감축효과가 모든 WTO 회원국에 미치는 것으로 요약됨.<sup>29)</sup>
- 비록 정보기술협정 그 자체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에서 말하는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은 아니지만,<sup>30)</sup> WTO 회원국들인 ITA 참여국들이 합의한 내용이 GATT 1994 양허표의 일부가 됨.

■ (요건) ITA 형식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요건 1) 환경상품 무역협정은 DSU의 대상협정이 아니어야 함.
- (요건 2) 참여국들은 WTO 회원국이거나 가입과정에 있거나 또는 가까운 시기에 가입 예정이어야 함.
- (요건 3) 환경상품 무역협정이 참여국들에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감축 합의를 GATT 1994의 양허표에 반영할 것을 환경상품 무역협정상의 의무로서 부과하여야 함.

26) Matthew Kennedy(2012), p. 1.

27)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3조.

28) *Ibid.*, p. 7.

29) WTO(1996), para 2.

30) 부속서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1조.

■ (효력) ITA 형식의 협정은 다음과 같은 형식적, 실질적 효력을 지님.

- (형식적 효력) ITA 형식에 따라 성립된 환경상품 무역협정은 DSU가 적용되는 대상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ITA협정 위반 그 자체를 이유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없음.
- (실질적 효력) 환경상품 무역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GATT 1994 양허표에 기재한 양허의 내용을 참여국이 위반하는 경우 환경상품 무역협정의 다른 참여국은 DSU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허의 정지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WTO 협정의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음.
  - 물론 이때는 환경상품 무역협정상의 의무위반이 아닌 GATT 1994 양허표상의 의무에 대한 위반을 그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환경상품 무역협정의 참여국이 아닌 다른 WTO 회원국도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그 해결을 구할 권리가 있음.

■ (평가) ITA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장점) 참여국들이 양허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강력한 제제가 가능하므로 환경상품 무역협정상의 의무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음.
- (단점) 환경상품 무역협정의 참여국들이 합의한 내용이 GATT 1994 양허표의 일부분이 되면 GATT 1994 상의 원칙인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되므로, 환경상품 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WTO 회원국에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ITA의 경우 출범 초기에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sup>31)</sup> 미국과 EU의 리더십을 통해 주요 교역국들의 참여를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됨.<sup>32)</sup>

## 나. GPA 형식

■ (의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형식이란 환경상품 무역협정을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추진하되, WTO 설립협정 부속서4에 포함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형식으로 성립시키는 것을 의미함.<sup>33)</sup>

- 현재 WTO 설립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과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이렇게 두 개 협정이 있으며, 우육에 관한 협정과 낙농에 관한 협정은 1997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은 2004년에 각각 종료되었음.<sup>34)</sup>
- WTO 설립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이를 수락한 참여국과의 관계에서만 WTO 설립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구속력 역시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해서만 인정됨.<sup>35)</sup>

31) WTO(2012), p. 15.

32) *Ibid.*, p. 38.

33) Matthew Kennedy(2012), p. 9.

34) WTO(2013).

■ (요건) GPA 형식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요건 1) 환경상품 무역협정은 DSU의 대상협정이 아닌 복수국간 무역협정이어야 함.
- (요건 2) 환경상품 무역협정 참여국들은 WTO 회원국이어야 함.
- (요건 3) 환경상품 무역협정 참여국들이 부속서 4에 추가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WTO 각료회의에서 총 의(consensus)로 결정하여야 함.

■ (효력) GPA 형식으로 성립된 환경상품 무역협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지님.

- (형식적 효력) 협정 참여국 사이에서는 동 협정이 WTO 설립협정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환경상품 무역협정의 참여국과 비참여국 사이에서는 양국이 모두 WTO 회원국이라도 양국 사이에서는 동 협정이 WTO 설립협정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효력이 발생함.
- (실질적 효력) 환경상품 무역협정상 의무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국 사이에서는 동 협정 위반을 직접원인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만, 참여국이 아닌 다른 WTO 회원국은 환경상품 무역협정상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음.

■ (평가) GPA 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장점) 환경상품 무역협정을 GPA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비참여국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음.
- (단점 1) 협정내용에 대해 각국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어 WTO의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에서 환경상품에 관한 협정이 총의를 통해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낮음.
- (단점 2)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얻는다고 해도, 동 협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보전에 있음을 고려하면 인도,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참여 없이 제한된 국가들의 참여만으로는 협정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음.

## 다. Stand-alone 형식

■ (의의) Stand-alone 형식이라 함은 환경상품에 관한 협정을 UNFCCC와 같이 WTO 협정과는 무관한 별개의 규범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 WTO 협정은 회원국들이 WTO 규범의 틀 밖에서 특정 회원국들에만 적용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특정 무역협정이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인정되기 위한 신청절차를 정한 규정 역시 특정 무역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에 신청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님.

35)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를 구현하는 최종의정서 제4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2.3조.

■ (요건) Stand-alone 형식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 소극적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형식적 요건) 환경상품에 관한 협정은 형식적인 면에서 WTO 협정의 일부분이 아니어야 함.
  - 형식적인 면에서 WTO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환경상품 무역협정이 WTO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해 WTO 설립협정에 부속되어 WTO 협정의 일부분이 되는 GPA 형식을 들 수 있음.
- (실질적 요건) 환경상품에 관한 협정은 실질적으로도 WTO 협정의 일부로 편입되지 않아야 함.
  - 실질적으로 WTO 협정과 관련을 맺게 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ITA 협정의 참여국들이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ITA 협정상 부과 받은 의무의 이행으로 GATT 1994 양허표에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ITA 협정이 형식적으로는 WTO 협정에 부속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ITA 협정상의 의무가 ITA 협정 참여국 사이에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행되는 것을 들 수 있음.
  - 다만, 무역협정들이 사실상 또는 결과적으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환경상품에 관한 협정이 사실상(de facto) 또는 협정이 적용된 결과(as applied)로서 WTO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과는 서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함.

■ (평가) Stand-alone 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장점) WTO 비회원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 상위에 있는 이란과 카자흐스탄 등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sup>36)</sup>
- (단점) 한 협정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협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이른바 의무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sup>37)</sup>
  - (의무충돌의 예) 어떤 WTO 회원국이 WTO 규범의 틀 밖에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서 요구되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이행한 결과, 당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다른 WTO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WTO 협정 위반의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들 수 있음.
  - (의무충돌의 발생이유) 원칙적으로 조약은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조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해 그 국가의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못하기 때문임.<sup>38)</sup>
  - (규범충돌의 예) 두 규범 사이의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정한 의미의 규범충돌 사례는 WTO 협정이 관련된 영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유사충돌의 예) 다만 이른바 규범의 유사충돌(부진정 규범충돌) 사례로는 칠레-황새치 사건,<sup>39)</sup> 멕시코-청량음료 사건,<sup>40)</sup> 브라질-재생타이어 사건<sup>41)</sup> 등이 있음.

36) Matthew Kennedy(2012), p. 32.

37) ICTSD(2011), p. 63.

3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4조.

39) Matthew Kennedy(2012), p. 35, Chile-Measures affecting the Transit and Importing of Swordfish, WT/D/193. WTO 분쟁해결절차와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에 동시에 회부되었으나, 분쟁당사자의 양자합의로 종결됨.

40) Mexico-Tax Measures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WT/DS308/AB/R, para 85. 멕시코는 NAFTA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41) Brazil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yres, WT/DS332/AB/R, para 234. 브라질은 MERCOSUR 중재재판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으나,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MERCOSUR 협정과 WTO 협정 사이의 규범충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음.

표 5. 규범형식별 특징과 장단점

특징		규범형식	ITA 형식	GPA 형식	Stand-alone 형식
효력상 특징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 가능성		○	△	×
	무임승차 차단 가능성		×	○	○
	WTO 비회원국의 참여 용이성		×	×	○
	규범충돌 가능성		×	×	○
절차상 특징	WTO 협정 개정 필요성		×	○	×
	GATT 양허표 수정 필요성		○	×	×

주: ○(긍정적), △(제한적), ×(부정적).  
자료: 저자 작성.

## 5. 시사점

■ (환경상품협상 자체)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협정 내용뿐 아니라 규범형식에 따른 우리의 이해득실을 검토하여 대응전략과 입장을 정립해야 함.

- 미국의 기후변화 행동계획에서 자국 내 노력 외에 국제적 공조와 그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등 향후 환경상품 무역협정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미국이 실제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 전 세계 환경상품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여 주요국들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협상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의미하는 바가 큼.
- 동 협상은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협정의 규범형식에 따라 각국별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전략을 체계화하는 데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함.

■ (통상협상 일반) 동 협정의 유력한 규범형식인 부문별 복수국간 협정방식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바, 선진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동 협상의 논의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 통상전략 수립에 활용해야 함.

- WTO DDA 협상 부진 및 장기화로 양자간 FTA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1) 미-EU FTA, EU-일 FTA, TPP 등 거대 지역무역협정과 2) ACTA(위조방지 무역협정),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ITA 확대협상 등 부문별 복수국간 협정이 확대되고 있어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선진국의 사전포석 전략이라는 시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 올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WTO 각료회의의 결과에 따라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대안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때 새롭게 진행될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가 '대안 논의'에 새로운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함.
- 또한 현재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주요교역국이면서 양자 혹은 삼자간 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점에서 부문별 및 양자간 무역협정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입체적 협상전략이 필요함.

- (환경협상 관련) 환경상품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전략은 동 협정이 국제통상규범뿐 아니라 국제환경규범에 관한 논의전개와 맞물린 점을 고려하여, 대응체계를 종합적,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환경상품 무역협정 논의는 국제환경문제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해결책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는 모두 국제환경 개선을 기본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른 분야의 복수국간 협정과 달리 국제환경규범 논의와 독립적으로 전개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역과 환경을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대응체계가 필요함.
    -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는 국제통상 및 국제환경 관련 담당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환경 국제협상 대응 TF’를 발족시켜 상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 사안에 대하여 통합적 고려가 반영된 전략을 생성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시작임.
  - 국제환경규범은 통상규범과 달리 오염자 부담원칙과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규범에 비해 개도국 우대에 더 큰 가중치가 요구되어 한 규범에서의 이익균형이 다른 규범에서는 불균형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령 UNFCCC에서는 선진국의 기술이전뿐 아니라 재정이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규범 내 기술이전과 관련 해서도 2011년 7월 DDA 협상에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에 대한 보장이 미흡함을 이유로 중국이 미국과 캐나다 등의 제안을 반대한 사례가 있음.
  - 대표적 국제환경협정인 UNFCCC는 2020년 신체제 출범을 목표로 2015년까지 협상안 타결을 계획하고 있어, 환경상품 무역협상의 각 단계(개시, 본격화, 마무리)가 2015년 이전,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2020년 이후 세 기간에 걸쳐 어떻게 배열되는지가 충실히 반영된 단계적 협상전략 구성이 필요함.
-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는 급변하는 국제통상체제와 국제환경규범의 교집합 영역에 속하는 국제논의로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에 대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현재 우리가 가진 외교적 전략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해야 함.
  - 신기후체제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비의무감축 국가 지위 유지가 사실상 어렵거나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아 환경상품 협상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높으며, 반대로 환경상품 무역협상 논의가 선진국 중심으로 흐르고 우리나라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신기후체제에서 우리의 전략적 위치를 불리하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효과적 전략자원활용과 관련한 예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을 환경상품 관련 기술이전 및 관련 제품 사용 확대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GCF 재원의 활용이 용이한 품목과 환경상품 무역협정에 포함될 품목을 가능한 일치시키는 안(案)을 제안하여 GCF의 역할확대를 통한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동 안은 규범간의 시너지를 통해 개별 규범의 내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sup>42)</sup> 환경상품 수출국인 선진국뿐 아니라 기술이전의 수혜대상인 개도국 모두에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한 제언일 수 있음. **KIEP**

42) 개별 규범의 내적효율성이란 환경규범에서는 관련 기술의 확산을 통한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성 향상, 통상규범에서는 관련 투자의 확대를 통한 환경상품 교역 증진의 효율성 향상을 의미함.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정근·금혜윤. 2011.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자료 11-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경수·박혜리. 2013. 『APEC 환경상품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영문자료]

- Ludema, Rodney D. and Anna Maria Mayda. 2009. “Do countries free ride on MF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7(2), pp. 137–150.
- World Bank. 2007. “Warming up to Trade? Harnessing international trade to support climate change objectives.”
- WTO. 1996. WT/MIN(96)/16 (13 December 1996).
- \_\_\_\_\_. 2000. WT/D/193 (26 April 2000).
- WTO Appellate Body Report. 2006. “Mexico–Tax Measures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WT/DS308/AB/R (6 March 2006).
- \_\_\_\_\_. 2007. “Brazil–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yres.” WT/DS332/AB/R (3 December 2007).

### [온라인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3. “Trade: a key source of growth and jobs for the EU.” (2013. 7. 8)  
[http://ec.europa.eu/commission\\_2010-2014/president/news/archives/2013/02/pdf/20130205\\_2\\_en.pdf](http://ec.europa.eu/commission_2010-2014/president/news/archives/2013/02/pdf/20130205_2_en.pdf)  
(accessed Jun 29, 2013).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3. 6. The White House. 2013.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2013. 6.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image/president27sclimateactionplan.pdf>  
(accessed July 12, 2013).
- Gary Clyde Hufbauer and Jisun Kim. 2009.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웹사이트.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Climate change.” 2012. 9. <http://www.piie.com/publications/interstitial.cfm?ResearchID=1301> (accessed Jun 27, 2013).
- ICTSD 웹사이트. 2011. “Fostering Low Carbon Growth: The Case for a Sustainable Energy Trade Agreement.” 2011. 11. <http://ictsd.org/i/publications/117557/?view=document> (accessed July

2, 2013).

\_\_\_\_\_. 2013. "Obama Plan Aims to Cap Carbon Emissions, Boost Renewables." 2013.6.27.  
<http://ictsd.org/i/news/boiores/170558/> (accessed July 11, 2013).

Matthew Kennedy, 2012. ICTSD. "Legal Options for a Sustainable Energy Trade Agreement."  
2012. 7. <http://ictsd.org/i/publications/138050/> (accessed Jun 28, 2013).

Senator Ron Wyden, 2010. "Major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U.S. Exports of Environmental Goods." (2010. 5. 20) <http://www.wyden.senate.gov/download/follow-up-report-to-major-opportunities-and-challenges-to-us-exports-of-environmental-goods> (accessed Jun 28, 2013).

The White House 웹사이트. 2013a. "Remarks by the President on Climate Change." 2013. 6.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25/remarks-president-climate-change>  
(accessed Jun 28, 2013).

\_\_\_\_\_. 2013b. "The State of the Union." 2013. <http://www.whitehouse.gov/state-of-the-union-2013> (accessed July 7, 2013).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WTO 웹사이트. 2012. "15 Year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Trade, innovation and global production network."  
[http://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ita15years\\_2012\\_e.htm](http://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ita15years_2012_e.htm) (accessed July 10, 2013).

\_\_\_\_\_. 2013. WTO legal texts.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legal\\_e.htm](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legal_e.htm) (accessed July 11, 2013).